

日本意匠制度改善

I. 머리말

日本特許廳은 意匠의 權利化에 있어 緊急性을 要하는 實施出願에 관한 早期審查 및 關聯審判事件에 대한 早期審理制度를 導入, 지난 3月1日부터 申請을 받아 試行的으로 實施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일본의 활발한 제품디자인 개발을 반영하는 일로서, 日本 특허청에 출원되는 의장등록출원 건수가 연간 5만건을 넘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미처리건수는 12만건을 넘으면서, 그 심사처리 기간이 평균 2년3개월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의장심판사건의 미처리건수는 약 7千건이며, 審判의處理期間은 평균 4년5개월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에 對處하기 위해 日本 특허청은 意匠에 있어서의 審查·審理効率의 向上, 정보서비스의 擴充 等을 목적으로 하여, 페이퍼레스 計劃을 확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심사기준 등의 정비, 適正化施策의 推進, 意匠制度의 檢討 등 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施策의 추진에 힘쓰고 있다.

特許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있어서는 1986年 2月 1일부터 「實施關聯出願」에 관한 早期審查 및 早期審理制度를 導入, 實施해 오고 있다.

日本 특허청은 意匠登録出願에 있어, 상기한 바와 같은 長期의이면서도 綜合의 인 施策推進에 덧붙여서, 디자인 등의 보방문제에 관한 대책으로서 出願人·業界로부터 심사·심판처리의 迅速化에 관한 요구가 특히 높아짐에 따라 「權利化에 있어 緊急性을 要하는 實施出願」을 대상으로 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

한 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제도를 試行的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制度의 도입에 따라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장등록출원과 조기심리의 대상이 되는 의장등록출원 관련 심판사건으로서, 先行意匠調査 등의 충분한 協力を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조기에 그에 대한 着手가 이루어짐으로서 처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II. 基本方針

이 制度는 다음과 같은 基本方針에 의거하여 지난 3月 1일부터 申請接受를 시작하였다.

의장등록출원의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의 도입에 있어서는, 의장심사방식의 특수성을 살리고 통상적인 출원·심판사건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도내에서 審查·審理處理能力의一定部分을 이에 중당.

이러한 조기심사 및 早期審理制度는 우선 試行의 으로 이를 實施运用하며, 대상 및 조건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申請狀況 등을 살피면서 必要에 따라 재검토.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의 대상은 「 권리화에 있어 緊急性을 要하는 實施出願」으로 한다.

「 권리화에 있어 긴급성을 要하는 實施出願」이란 출원인 자신 또는 라이센시가 그 意匠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으로서, 제3자가 許諾 없이 그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준비를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키고 있음이 명백한 것을 가리킨다.

조기처리의 관점에서 출원인에 대해 선행의장조사 등의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에 必要한 資料提出을 요청한다.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도록, 신청안전을 염선할것을 출원인에 대해 요청한다.

III. 早期審查에 관한 取扱(概要)

조기심사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早期審查

(1) 조기심사의 對象이 되는 出願

下記와 같은 要件 모두를 구비한 意匠登録出願은 早期審查의 對象이 될 수 있다.

① 「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의장에 관해 實施許諾을 받은 자(라이센시)가 그 의장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으로서 권리화에 있어 긴급성을 要하는 것」인 것.

여기에서 「 권리화에 있어 긴급성을 要하는 것」이란

긴급한 권리화가 요구되는 것을 가리키며, 「제3자가
許諾 없이 그 意匠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에 대
한 준비를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키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② 審査官에 의해 當該 出願의 심사가 開始되지 않은 것.

(2) 早期審査節次

「早期審査에 관한 事情説明書」가 日本 특허청에 제출된 경우, 審査長 등에 의한 選定 결과, 조기심사의 대상이 된 출원에 관해서는, 심사관은 신속하게 심사를 개시하여(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좌수 후의 처리에 있어서도 지체없이 그 처분이 終了되도록 심사절차를 진행시킨다.

(3) 提出書類의 閲覽

「조기심사에 관한 事情説明書」는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서류등의 열람과 마찬가지로 그 閲覽이 가능하다.

(4) 登錄意匠公報에 관한 表示

조기심사의 대상이 된 출원은 등록의장공보에 그것을 表示한다.

2. 提出節次

(1) 提出者 및 提出時期

출원인은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를 출원일 이후에라도 제출할 수가 있다.

(2) 手數料

必要치 않음.

(3) 提出書類

「조기심사에 관한 事情説明書」를 제출한다. 「조기심사에 관한 事情説明書」의 提出時, 조기심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先行意匠調査」 및 「自己의 意匠登録出願中인 意匠에 관한 開示」 등 項目的記載가 必要하다.

① 實施狀況說明

실시행위의 特定 및 의장의 실시시기를 기재하고, 의장실시를 나타내는 資料 또는 물건을 제출한다.

② 緊急性을 要하는 狀況에 관한 설명

제3자가 許諾 없이 그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의 준비를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키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권리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狀況을 說明한다.

③ 先行意匠調査

조사대상은 최소한 일본국등록의장공보로 한다.

그 출원의장이 특정물품에 관한 것일 경우는, 사단법인 일본 디자인보호기관연합회 및 그 協力機關으로서 물품마다 정해진 취급기관이 행하는 선행의장조사 결과를 첨부할 것이 要望된다.

調査分類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출원 의장에 관한 물품이 속하는 「意匠分類表」의 小分類로 하며, 조사년도의 범위는 출원일로부터 15年前까지로 한다.

④ 자기의 意匠登録出願中인 意匠에 관한 開示

유사의장의 등록요건(의장법 제10조)에 관한 조사를 效率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중인 의장에 관한 開示」를 必要로 한다.

開示의範圍는 그 출원의장에 관한 물품이 속하는 「의장분류표」의 소분류 범위에서, 그 출원과 同日字 또는 그 출원일 前에 출원한 자기의 다른 의장등록출원(최종처분이 確定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早期審查申請을 한 출원의 유사등록의 등록요건(의장법 제10조)의 判斷에 관련성이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IV. 早期審理에 관한 取扱(概要)

1. 早期審理

(1) 早期審理의 對象이 되는 審判事件

下記한 바와 같은 要件 모두를 갖춘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판사건이 조기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심판청구인 자신 또는 심판청구인으로부터 그 출원의장에 관하여 실시하락을 받은 자(라이센서)가 그 의장을 실시하고 있는 심판사건으로서, 권리화에 있어 긴급성을 要하는 것」인 것.

여기에서 「권리화에 있어 긴급성을 要하는 것」이란 긴급한 권리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제3자가 허락 없이 그 意匠을 實施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준비를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키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② 審判合議體에 의한 審理가開始되지 않은 것

③ 拒絕査定不服審判事件인 것

(2) 早期審理節次

「조기심리에 관한 事情説明書」가 특허청에 제출되었을 경우, 部門長審判長에 의한 선정 결과, 조기심리의 대상이 된 심판사건에 관해서는 擔當合議體는 신속하게 심리를 개시하여, 좌수후의 처리에 있어서도 지체없이 그 처분이 終了되도록 심리절차를 진행시킨다.

(3) 提出書類의 閲覽 및 登錄意匠公報에 관한 表示

조기심리에 관한 제출서류의 열람, 등록의장공보에 관한 表示는, 조기심사에 관한 취급에 준한다.

2. 提出節次

(1) 提出者 및 提出時期

當該審判請求人은 「조기심리에 관한 事情説明書」를 심판청구일 이후 언제든지 제출할 수가 있다.

追加的으로 先行意匠調査를 實施해야
하는 物品 및 先行意匠調査實施機關

對象物品名	取扱機關
시체·조명기구	(社)일본디자인보호기관연합회
영사기·촬영기·노출계· 사진기·카메라렌즈·데이 프레코더	(財)일본기계디자인센터
타일·식탁주방용품(도자 기제품인것)	(財)일본도자기의장센터
의자(금속제품인것)·낚시 용리일·식탁주방용품(단, 도자기제품인것 제외)·라 이터	(財)生活用品振興센터
의자(단, 금속제품인것 제 외)·가구용손잡이·가구 용장식금具·데이블·책상 ·식기장·장식장·책장· 가구용경첩(hinge)	(財)일본가구디자인센터

(2) 수수료: 必要치 않음

(3) 提出書類

「조기심리에 관한 사정설명서」를 제출한다. 「조기심리에 관한 사정설명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조기심리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主張」에 관한 기재가 要望된다.

① 實施狀況에 관한 說明

실시행위의 特定 및 의장의 실시시기를 기재하고.
의장실시를 표시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다.

② 진급성을 요하는 狀況에 관한 說明

제3자가 許諾 없이 그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의 準備를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급한 權利化가 요구되고 있는 狀況을 설명한다.

③ 拒絕理由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主張

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先行意匠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具體적으로 서술한다. <略>

한국발명특허협회 캠페인

1년앞선 특허관리	10년앞선 선진기업
발명하는 국민되어	복지국가 건설하자
이웃마다 믿는마음	거리마다 밝은마음

新刊案内

工業所有權法

저자: 辨理士 李秀雄 저

규격: 국판 748면

가격: 12,000원

工業所有權法要解

저자: 辨理士 金學濟·金延洙 공편

규격: 국판 734면

가격: 9,000원

特許法概論

저자: 辯護士 鄭寅鳳 저

규격: 국판 722면

가격: 9,500원

商標法

저자: 辨理士 李秀雄 저

규격: 국판 552면

가격: 9,500원

意匠法解說

저자: 辨理士 尹鍾廉 저

규격: 국판 884면

가격: 15,000원

改正版

商標法解說

저자: 金寬衡(本會研修部長)

규격: 국판 480면

가격: 9,5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발명장려관
내 자료판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68-8263